

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(안)

의안번호

제출년월일 : 1992. 9.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 안 이 유

- 공유재산으로서 현재까지 장림1파출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건물노후 등으로 사하경찰서에서 멸실승인을 요청
- 부산직할시 사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시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

2. 주 요 내 용

- 우리구 소유로 된 건물(사하경찰서 장림1파출소)이 74. 2. 6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내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전면적인 개축이 요구되는 바, 사하경찰서에서 노후파출소 개축계획에 의거 자체 예산으로 개축코자 용도폐지(멸실) 승인 요청

3. 재산의 표시

소 재 지	건물 사용부서	건물, 연면적(m²)	준공년월일	소 유
장림동 325-11	장림1 파출소	95.87	74. 2. 6	사하구

4. 신 청 근 거

- 부산직할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
(※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확충계획(안))

'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신청내용

1.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른 의회의결

가. 근거법규 :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

나. 내 용 :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2. 의 결 요 지

장림1파출소는 74. 2. 6 건축된 1층 62.81㎡, 2층 33.06㎡, 연건평 95.87㎡ 건물로 내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시설 여러곳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다시 개축해야될 상황이므로 노후 파출소 개축계획에 의거 사하경찰서에서 자체예산으로 개축코자 별실승인 요청

3. 재산의 표시

소 재 지	건물 사용부서	건물, 연면적(㎡)	준공년월일	소 유
장림동 325-11	장림1 파출소	95.87	74. 2. 6	사하구